

## 시험기관의 시설 및 기구이용계약서

대구대학교 중앙기기센터를 '갑' 이라 칭한다.

(주) 제일 제약을 '을' 이라 칭한다.

'갑'과 '을'은 "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업·수입자와판매업의시설기준령" 제10조의3 및 "약국및의약품등의제조소·수입자의시설및기구와제3자의시설및기구이용범위지정"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상호계약을 체결한다.

아 래

(1) '을'은 '갑'의 시험기관의 다음 기기를 이용한다.

총유기체탄소분석기(TOC분석기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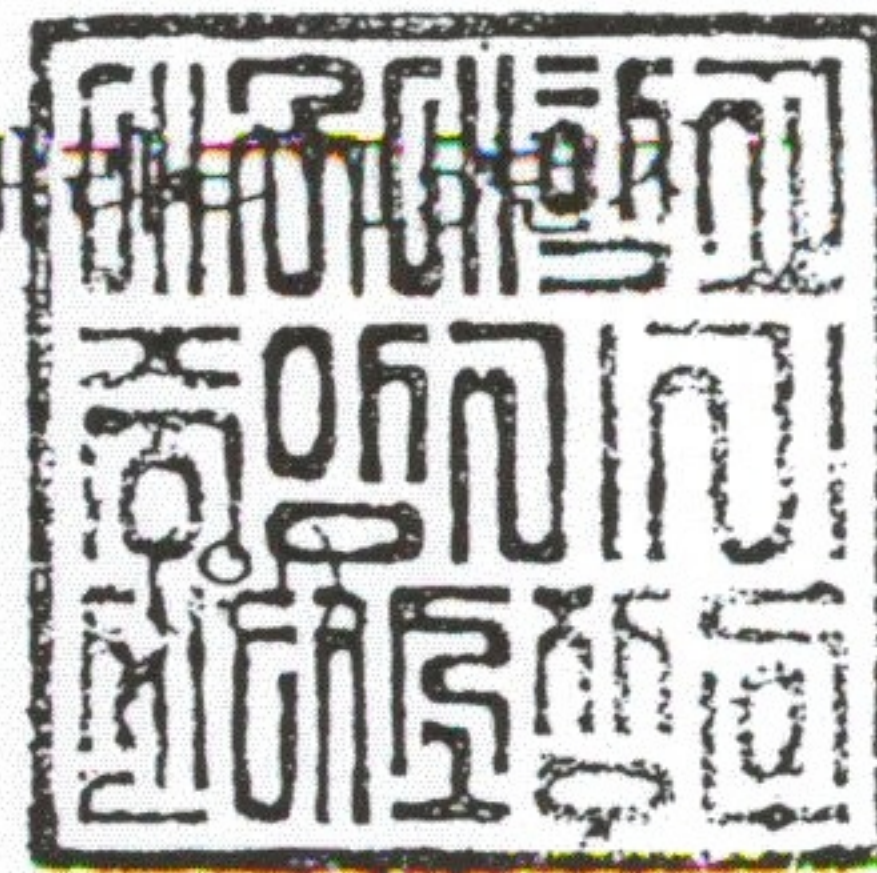
(2) 계약기간은 1999년 6월 28일부터 2000년 6월 27일까지(1년간)로 한다.

(3) 별도로 해약하지 않는 한 계약기간은 1년간씩 계속 자동연장한다.

이상 제사항을 약정하고 본 계약서에 각각 서명날인하고 이를 보관한다.

1999년 6월 28일

갑 :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  
대구대학교 중앙기기센터  
소장 김 도 성



을 : 대구광역시 달서구 대천동 739번지  
(성서공단2차단지2지구 64B 2L)  
(주) 제일 제약  
대표 : 김 성 자

